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18일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

나. 제안이유

- 노인종합 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1조)
 - 노인복지법 제4조 → 제4조 및 제37조
-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안 별표 1)
 - 2,300원 → 2,500원
-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 구미시에 거주하는 → 구미시에 주소를 둔

라.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 「주민등록법」 제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 노인종합복지회관 내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설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안 제1조),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행 2,300원에서 2,500으로 조정(안 별표1)하며,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시설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